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으로서 그 사항이 표시·광고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그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표시·광고사항에 포함시킬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비자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사후구제가 곤란하게 되는 문제 2.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알지 못한 사실이 구매선택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문제 3. 기타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문제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련 사업자단체, 소비</p>	<p>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광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을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사항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 또는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p>

현행	개정안
<p>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표시·광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보호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함에 있어서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 및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p> <p>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 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사업자등은 표시·광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4조의2(중요정보제공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요정보의 발굴·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공고에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제공촉진 등에 관한 사항 <p>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p> <p>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행정기관에서 표시·광고의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그 단체의 임원·직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3. 소비자정보의 제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등)</p> <p>①·②(생략)</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실증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생략)</p> <p><신설></p> <p>제14조(표시·광고의 자율규약)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을 정할 수 있다.</p> <p><신설></p> <p>②(생략)</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 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신설></p> <p><신설></p>	<p>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p> <p>④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등)</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 15일 이내</p> <p>④(현행과 같음)</p>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광고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p> <p>제14조(표시·광고의 자율규약) ①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p> <p>② 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제3항의 규정</p>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제14조의2(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① 사업자등</p>

연 행	개 정 안
	<p>의 표시·광고가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등을 심의(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표시·광고가 법령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p> <p>② 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 판단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에 대하여 심의 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내용이나 처리결과 등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등에게 그 표시·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이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대상을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들이 행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가 시정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들이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율심의기구의 시정만으로는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피해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자율심의기구 등(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기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위임받은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를 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p>

표시·광고에 명시해야 할 중요정보내용 고시(告示) 현황

■ 분야별 중요정보 : 2개 분야 3개 항목

분야	업종	중요정보내용	적용대상	
			표시	광고
유전자변형 물질 분야	-식품·제조판매업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①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	-	○
상표권 분야	-상표권	① 권면금액 중 사용후의 잔액에 대한 현금환불 기준 ②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경우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표권에 대한 보상기준	○	○

■ 업종별 중요정보 : 24개 업종 49개 항목

업종	중요정보내용	적용대상	
		표시	광고
부동산 중개업	①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피해보상기준 ②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와 거래 및 이용제한 사항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피해보상기준	○	○
학습교재	① 구입 후의 철회가능 여부와 철회의 방법 ② 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교재사용연령(아동용 학습교재에 한하여 적용한다)	○	○
학원운영	①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의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②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외에 부대비용의 추가부담 여부	○	○
증권투자 운영	① 환매 신청후 환매금액의 수령이 가능한 구체적 시기 ② 환매수수료 ③ 성과수수료(운용수수료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 등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	○	○
장의업	① 수의 원단 제조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구성비율 및 원산지 ② 수의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지역 ③ 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	○	○
체육시설 운영업	①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② 체육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시 잔여기간의 이용료 환불기준	○	○
할인카드회 원권운영업	① 할인카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보상기준 ② 가맹점의 수 및 상품별 할인율	○	-
사진현상 및촬영업	① 현상불량 등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기준 ② 사진원판의 인도가능 여부	○	○
화물자동차 운수업	① 분실·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	○

부 록

표시·광고에 명시해야 할 중요정보내용 고시 현황

업 종	중요 정보 내용	적용대상	
		표시	광고
원구업 (작동완구)	① 결함·하자 등 피해발생시 보상기준	○	○
의류업	① 원재료의 종류와 그 혼용률(함유비율) ② 세탁방법 등 취급상의 주의사항	○	-
가구업	① 주요 원재료의 종류 ② 환불·교환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
주방용품업	① 품질보증기간 ② 환불·교환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
귀금속·보석업	① 세공불량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② 가공국가명 및 가공지역명(국내가공의 경우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 ○	- ○
자동차 부품업	① 품질보증기간 ② 환불·교환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	-
투자자문·투자일임업	① 투자위험성 또는 원본손실 가능성 등 유의사항	○	○
건강식품업	① 환불·교환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 ② 부작용 발생가능성(부작용이 있을 경우)	○	○
산후조리원 운영업	①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② 중도 해약시 환불가능 여부 및 환불기준	○	○
공동주택업	①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보상기준	○	○
유사금융업	① 연(年) 단위 환산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② 이자 이외 추가비용이 있는 지 여부	○	○
결혼정보업	①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② 중도해지시 가입비 환불기준	○	○
영화업	① 상영 등급	-	○
부동산 분양업	① 건축허가 취득여부 ②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③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④ 시행사·시공업체명 ⑤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	-	○
여행업	① 광고상 제시한 가격 외의 추가비용 유무(공항이용료, 보험료, 관광진흥기금, 필수관광 경비, 안내원 수수료 등 일체 경비 포함. 단, 광고되는 다수의 여행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추가 경비는 이를 1개의 공통항목으로 기재 가능) ②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여부	-	○

소비자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예규 29호)

I.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함에 있어서 특히,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이 심사지침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이 심사지침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행위가 이 심사지침에서 제시된 「범위만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 결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3조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2. 또한, 소비자 안전과 관련하여 소비자 오인성 여부 심사 시 당해 상품등의 주 구매 또는 사용·이용 소비자 계층의 오인가능성, 동시대의 안전관련 기술·지식의 발전 정도, 평균적인 일반 소비계층의 인식 정도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사실이 소비자의 선택이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심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안전"이라 함은 소비자가 상품등을 사용·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생명 및 신체상(이하 "생명등"이라 한다)의 위해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 나. "위해"라 함은 소비자가 상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생명등의 위험 또는 손해가 실현되거나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어린이"라 함은 생후 14세까지의 자를 말한다.

III. 심사 지침

1. 공통 지침

- 가. 상품등의 안전관련 특성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 인체에 유해한 성분(원자재)이 포함된 상품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그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평균적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표시·광고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의 안전관련 장치 또는 부속품이 중고품 또는 재생산품인 경우에 그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그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이 폭발할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경우에 상품의 용기나 포장지등에 대해 상품이 폭발 우려 등 위험한 것이라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의약품이 아닌 상품의 효능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의 효능 등에 대하여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나. 상품등의 사용·이용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
- 상품등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연령, 성별, 효능 등 사용·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등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생명등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면서 스트레스해소, 쾌감 또는 만족감 등을 특별히 강조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당해 상품등을 사용·이용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불안감, 공포 또는 근심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상품등의 사용·이용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등의 사용·이용에 있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당해 상품이 안전기능 등이 완전하여 소비자가 더 이상의 안전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의 사용, 보관 또는 폐기 등과 관련하여 사용방법 또는 주의(경고)사항을 표시·광고함에 있어서 그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다. 추천·보증 등의 방법을 이용한 부당한 표시·광고
 - 안전관련 사항의 기준, 검사, 형식승인 등 법령상의 기준을 통과한 상품에 관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상품의 안전성을 추천·보증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의 일부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통과하였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전체가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처럼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의 수상 경력을 표시·광고하면서 상품에 대한 안전성이 이미 입증 또는 보증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상품의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특집기사 또는 의학칼럼 등의 형식으로 광고하면서 상품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
- 라. 안전관련 사항의 표시 방법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
- 상품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임에도 당해 사항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 또는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행위는 부당한 표시가 된다.
 - 제조일자, 유효(유통)기간 등이 소비자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인 상품에 있어서 그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는 부당한 표시가 된다.

2. 업종별 지침

가.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유효(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통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소비할 경우에 그 기간을 초과하여 생명 등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이 사실을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파격적인 가격으로 할인하였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OO 식품의 효능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당뇨병, 전립선비대에 좋고 정력 대부활” 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100% 천연식품 추출물인 이 OO은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라고 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의약품이 아닌 OO 식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대장균 O-157, 살모넬라균 등의 식중독 균까지 무력화시킵니다.” 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이온수기 상품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알칼리 이온수가 성장에 도움을 준다, 아토피 증상이 완화된,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 상처치료를 돕는다” 는 등으로 하여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비만해소용 식품에 대하여 과다 섭취할 경우에 건강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고 없이 많이 섭취할수록 비만해소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다이어트 식품 복용 후 나타나는 탈수, 설사 증상 등에 대하여 이를 흔히 발생하는 증상 또는 호전현상 등이라고 하면서 그 부작용 증상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OO 다이어트 식품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어떠한 합성보존료도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부 및 신생아 남녀노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이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OO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 간 질환을 단지 예방할 수 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간 질환·간 기능 보

호에 탁월, 지방간 독성해소 간염 수치저하”라고 하여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공인된 기관의 실험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담배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니코틴 함량이 가장 적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철분결핍으로 인한 피로, 권태 등의 증세에만 효험이 있는 약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고 단순히 피로, 권태 등에 효험이 있다고만 하여 이 약이 특정 원인과 관계없는 모든 피로, 권태 등에 효험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OO감기약병에 “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 사용상 주의 내용을 표시하고는 있으나 보통 소비자의 정상시력으로는 도저히 읽기 힘들 정도의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하는 경우

나. 자동차, 전기·전자 제품 등 생활용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자동차 타이어가 중고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가격이 싼 새 타이어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자동차의 충돌시험 결과 등으로 자동차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면서 정면충돌 등 그 특정 조건을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모든 상황에서도 안전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자전거, 모터사이클, 모터보트 또는 기타 승용물 등의 감속장치 또는 관련 부속품이 중고품인 경우에 그 사실을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OO 전기 찜질기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디지털 온도센서 부착, 자동으로 적정온도 유지, 온도 과승 방지 등으로 화상우려 없음” 이라고 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OO 전기 오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열선 보호막 처리로 화상을 완전 예방” 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 없이 “OOO 전파차단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백혈병 또는 뇌종양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 유발될 수 있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OO 북부 마사지기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 없이 “다이어트, 콜레스테롤수치, 체지방률이 감소된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자외선 차단제 OO 크림이 피부암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OO 크림을 바르면 암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객관적 근거 없이 “OO매트가 99.6% 수맥차단효과가 있으며 각종 질병이나 질병의 범주에 속하는 증상에 대해 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다”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다. 미용·레저 등 용역의 제공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새롭게 개발된 미용서비스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놀이시설 등 레저시설물 관련 “보호자 동반 이용, 이용 제한연령, 임신부·노약자 등 이용제한 등”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라. 어린이 관련 상품등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예시
- 어린이 등이 주로 사용하는 폭죽 제품에 안전 상 필요한 사용방법이나 주의사항이 영문이나 한자로만 표시되어 있어서 어린이 등이 이를 오인하여 안전과 관련한 주의를 하기 어렵도록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장난감을 가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장난감으로 때리거나 던지거나 사용하여도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등에 위해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 장난감 등 어린이관련 상품등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표시·광고된 그림이나 설명 등을 어린이가 모방했을 때 생명등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은폐·축소 등의 행위를 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 어린이 놀이방 매트에 대하여 인체에 해로운 환경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은폐·축소 등하면서 “OO사의 믿을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 어린이에게 안전한 매트”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에 생명등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보통의 성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성인전용이라고 표시·광고하지 않거나 어린이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제품 OO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무농약, 무화학비료로 재배한 정말 귀한 유기농 원료로 만든 OO”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I. (생략)</p> <p>II. 용어의 정의</p> <p>1. (생략)</p> <p>2. 할인가능어음 “할인가능어음”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어음할인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p> <p>3. (생략)</p> <p>4. 하도급거래 승계 가. ~ 나. (생략) 다. 건설관계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및 하도급법 시행령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제7항에서 열거한 법을 포함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건설업면허 및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지정을 받은 권한을 양수한 자는 양수 이전(양수시점에서 이미 시공완료된 공사는 제외)의 공사부분에 대하여도 하도급거래 당사자로 본다.</p> <p>III. 공정화 지침</p> <p>1. 법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수리 및 건설위탁의 범위 가. 제조위탁의 범위(법 제2조제6항) (1) ~ (2) (생략)</p>	<p>I. (현행과 같음)</p> <p>II. 용어의 정의</p> <p>1. (현행과 같음)</p> <p>2. 할인가능어음 “할인가능어음”이라 함은 다음의 금융기관에 의하여 어음할인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어음을 말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저축은행</p> <p>3. (현행과 같음)</p> <p>4. 하도급거래 승계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의하여 등록·의하여 등록·지정을 </p> <p>III. 공정화 지침</p> <p>1. 법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수리·건설 및 용역위탁의 범위 가. 제조위탁의 범위 (1) ~ (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3) 사업자가 <u>소프트웨어개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설계를 업으로 하는 경우</u> 나. (생략) 다. 건설위탁의 범위 법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u><신설></u></p> <p><u><신설></u></p>	<p><u><삭제></u></p> <p>나. (현행과 같음) 다. 건설위탁의 범위 법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10) (현행과 같음) (11) <u>하도급계약체결 이후 건설업자 요건 등 충족시 법적용 가능성</u> <u>사업자가 건설업자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다가 이후 동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새로운 하도급계약(변경 포함)분 부터 하도급법상 당사자가 될 수 있다.</u></p> <p>라. <u>용역위탁의 범위</u> <u><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법적용 예시></u> (1) 사업자가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가) <u>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 이하 같음)의 작성을 위탁하는 것</u> 예) <u>소프트웨어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구축 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개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설치 등)</u> (나) <u>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u></p> <p>(2) 사업자가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어지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영화, 방송프로그램, 영상 광고 등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p> <p>(3) 사업자가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p>

현 행	개 정 안
	<p>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u>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u></p> <p>(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u>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u></p> <p>예)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 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p> <p>(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p> <p>예)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한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설계</p> <p>(다) 애니메이션, 만화 등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p> <p>(라) 상품의 형태, 용기,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되는 디자인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p> <p>〈역무의 공급위탁의 법적용 예시〉</p> <p>(1) 사업자가 엔지니어링활동을 업으로 하는 경우</p> <p>(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공장 및 토목공사의 타당성 조사,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p> <p>(나) 시험, 감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p> <p>(다)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p> <p>(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의 운송 또는 화물운송의 주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p> <p>(3)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축물의 유지·보수, 청소, 경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p> <p>(4) 사업자가 경비를 업으로 하는 경우</p> <p>(가) 경비업법상 경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는 활동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p> <p>(나) 경비업법상 경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p>

현행	개정안
	<p><u>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u></p> <p>(5) 사업자가 물류 등을 업으로 하는 경우</p> <p>(가) <u>화물유통촉진법상 물류사업자 또는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제반활동을 위탁하거나 화물운송의 주선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u></p> <p>(나) <u>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항업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항만운송 및 제2조제4항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u></p> <p>(다) <u>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송업자가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u></p> <p>(6)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p> <p>(가) <u>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u></p> <p>(나) <u>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 개발·공급 및 컨설팅, 자료입력 등 단위 서비스제공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u></p> <p>(다) <u>위탁을 하는 사업자가 연구 및 개발을 업으로 하는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기술시험, 검사, 분석, 사진촬영 및 처리, 번역 및 통역, 포장, 전시 및 행사 대행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u> (단, 하도급법 제2조제1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은 제외)</p> <p>(7) 사업자가 광고를 업으로 하는 경우</p> <p>(가) <u>광고와 관련된 판촉, 행사, 조사, 컨설팅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u></p> <p>(나) <u>영상광고와 관련된 편집, 현상, 녹음, 촬영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u></p> <p>(다) <u>전시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u></p>

현 행	개 정 안																																						
<p>2. 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가. (생략) 나. <u>건설업, 엔지니어링활동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건축설계업의 경우</u> (1)·(2) (생략) <신설></p> <p>3. (생략)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법 제4조)</p>	<p>(8) 사업자가 방송·방송영상제작, 영화제작, 공연기획을 업으로 하는 경우 녹음, 촬영, 음향, 조명, 보조출연, 미술, 편집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p> <p>(9) 사업자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 등 부동산공급을 업으로 하는 경우 건축물분양에관한법을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의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p> <p>(10) 사업자가 도·소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p> <p>(11) 이상에서 열거한 역무의 공급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위탁받은 역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p> <p>2. 법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가. (현행과 같음) 나. <u>건설업의 경우</u></p> <p>(1)·(2) (현행과 같음) 다. <u>용역(서비스)업의 경우</u> (1)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는 법적용대상이 된다.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의 예시</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명, 억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사 례</th> <th colspan="2">원사업자</th> <th colspan="2">수급사업자</th> <th rowspan="2">법적용 해당여부</th> </tr> <tr> <th>종업원수</th> <th>매출액</th> <th>종업원수</th> <th>매출액</th> </tr> </thead> <tbody> <tr> <td>① 종업원수 및 매출액이 2배</td> <td>100</td> <td>50</td> <td>40</td> <td>20</td> <td>○</td> </tr> <tr> <td rowspan="2">② 매출액이 2배</td> <td>60</td> <td>50</td> <td>40</td> <td>20</td> <td>○</td> </tr> <tr> <td>30</td> <td>8</td> <td>20</td> <td>2</td> <td>×¹⁾</td> </tr> <tr> <td rowspan="2">③ 종업원수가 2배</td> <td>100</td> <td>50</td> <td>40</td> <td>30</td> <td>○</td> </tr> <tr> <td>20</td> <td>8</td> <td>5</td> <td>4</td> <td>×¹⁾</td> </tr> </tbody> </table> <p>주 1) 원사업자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또는 자산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하도급법시행령 제1조의2제4항)</p> <p>3. (현행과 같음) 4.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법 제4조)</p>	사 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용 해당여부	종업원수	매출액	종업원수	매출액	① 종업원수 및 매출액이 2배	100	50	40	20	○	② 매출액이 2배	60	50	40	20	○	30	8	20	2	× ¹⁾	③ 종업원수가 2배	100	50	40	30	○	20	8	5	4	× ¹⁾
사 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법적용 해당여부																																		
	종업원수	매출액	종업원수	매출액																																			
① 종업원수 및 매출액이 2배	100	50	40	20	○																																		
② 매출액이 2배	60	50	40	20	○																																		
	30	8	20	2	× ¹⁾																																		
③ 종업원수가 2배	100	50	40	30	○																																		
	20	8	5	4	× ¹⁾																																		

현 행	개 정 안
<p>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u>수의계약방식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 직접 공사비 수준을 현저히 하회하는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u> ※ “직접공사비”라 함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을 기준으로 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의 합계로 하되, 경비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기로 한 비목(예시 :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과 원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정경비(예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는 제외한다.</p> <p>(8) <u>경쟁입찰 또는 부대입찰의 경우 당초 낙찰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금액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u></p> <p>〈신설〉</p> <p>5. ~ 8. (생략)</p> <p>〈신설〉</p> <p>10. 부당감액의 금지 (법 제11조) 가. ~ 라. (생략)</p>	<p>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삭제〉</p> <p>(7)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행위</p> <p>5. ~ 8. (현행과 같음)</p> <p>9. 검사의 방법 및 시기(법 제9조) 가. <u>검사의 방법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수검사, 발체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합격 등이 있다.</u> 나. <u>검사결과외 통지기간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u> (1) <u>일일 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u> (2) <u>거대한 건설공사(댐·교량공사, 대단위 플랜트 공사 등),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u></p> <p>10. 부당감액의 금지 (법 제11조) 가. ~ 라.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u>마.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u></p> <p><u>바. 목적물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u></p> <p><u>사.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u></p> <p><u>아.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킨 경우</u></p> <p><u>자.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절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u></p> <p><u>차.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장비사용료를 공제하는 행위</u></p> <p><u>카.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의해 원사업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 표준안전관리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u></p> <p><u><신설></u></p>	<p><삭제></p> <p><u>마.</u></p> <p><u>바.</u></p> <p><u>사.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u></p> <p><u>아.</u></p> <p><u>자.</u></p> <p><삭제></p> <p>10-1.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u>가.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u> <u>나.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u> <u>다.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u></p>
<p>11. (생략)</p> <p>12. 현금비율 적용기준(법 제13조제4항)</p> <p>가. (생략)</p> <p>※ 현금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p>	<p>11. (현행과 같음)</p> <p>12. 현금비율 적용기준(법 제13조제4항)</p> <p>가. (현행과 같음)</p> <p>※ 현금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 라. (생략) <u><신 설></u> <u><신 설></u> 18. (생략) 19.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분쟁사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u>(가) 제조·수리위탁(소프트웨어개발업, 엔지니어링활동업, 건축설계업을 제외)에 대한 분쟁으로서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2,50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u> <u>(나) 소프트웨어개발업, 엔지니어링활동업, 건축설계업에 대한 분쟁</u> (2) 건설위탁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분쟁인 경우 ① 원사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서·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u>토건 시공능력평가액(또는 토건도급한도액) 순위 100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u> <u><신 설></u> 나. “가”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1) ~ (2) (생략) (3) 피조사인이 과거(신고 접수일 기준) 1년간 법 위반실적이 있고 과거 3년간 조치유형별 점수누계가 4점이상인 경우</p>	<p>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u>마.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u> <u>바. 수급사업자에게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여 제공 하도록 하는 행위</u> 18. (현행과 같음) 19.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 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분쟁사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u>제조·수리위탁에 대한 분쟁으로서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u> <u><삭 제></u> (2) 건설위탁의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에 대한 분쟁인 경우 ① 원사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서·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u>토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u> (3) 용역위탁의 경우 <u>(가) 용역위탁에 대한 분쟁으로서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체결 시점의 직전사업년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의 분쟁</u> 나. “가”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또는 과거 1년간 조정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p>

현 행	개 정 안																												
<p>20. (생략)</p> <p>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법 제25조)</p> <p>가. 시정조치유형별 점수관리</p> <p>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과하여 관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시정조치 유형별 점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유형</th> <th>조정</th> <th>경고</th> <th>시정 권고</th> <th>시정 명령</th> <th>과징금</th> <th>고발</th> </tr> <tr> <td>점수</td> <td>0.5</td> <td>1.0</td> <td>1.5</td> <td>2.0</td> <td>2.0</td> <td>2.5</td> </tr> </table> <p>※ 1개 사건에 대하여 2가지 유형 이상의 시정조치가 병과된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p> <p>나. 범위반 사실 공표</p> <p>(1) 요건</p> <p>(가) 시정명령 대상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사건처리 당시 범위반사실의 내용 및 정도, 범위반동기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p> <p>① 과거 1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가 <u>4점</u> 이상이 되는 경우</p> <p>② 과거 3년간 당해업체가 받은 시정조치 유형별 부과점수 누계가 <u>6점</u> 이상이 되는 경우</p> <p>(나) (생략)</p> <p>(2) 공표방법</p> <p>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u>법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u>”을 준용한다.</p> <p>다. (생략)</p> <p>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p> <p>(1) 요건</p> <p>(가) 과거 3년간 당해 업체가 받은 시정조치유형</p>	유형	조정	경고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1.5	2.0	2.0	2.5	<p>20. (현행과 같음)</p> <p>21.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법 제25조)</p> <p>가. 시정조치유형별 점수관리</p> <p>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점수를 부과하여 관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시정조치 유형별 점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h>유형</th> <th>경고 (서면)¹⁾</th> <th>경고 (신고, 직권)²⁾</th> <th>시정 권고</th> <th>시정 명령</th> <th>과징금</th> <th>고발</th> </tr> <tr> <td>점수</td> <td>0.5</td> <td>1.0</td> <td>1.5</td> <td>2.0</td> <td>2.0</td> <td>2.5</td> </tr> </table> <p>※ 1개 사건에 대하여 2가지 유형 이상의 시정조치가 병과된 경우에는 최상위 조치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정명령 2점, 고발 2.5점을 부과한다.)</p> <p>1)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p> <p>2) 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p> <p>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p> <p>(1) 요건</p> <p>(가)</p> <p>① <u>2점</u></p> <p>② <u>4점</u></p> <p>(나) (현행과 같음)</p> <p>(2) 공표방법</p> <p>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u>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u>”을 준용한다.</p> <p>다. (현행과 같음)</p> <p>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p> <p>(1) 요건</p> <p>(가)</p>	유형	경고 (서면) ¹⁾	경고 (신고, 직권) ²⁾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1.5	2.0	2.0	2.5
유형	조정	경고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1.5	2.0	2.0	2.5																							
유형	경고 (서면) ¹⁾	경고 (신고, 직권) ²⁾	시정 권고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점수	0.5	1.0	1.5	2.0	2.0	2.5																							

현행	개정안
<p>별 부과점수의 누계가 <u>15점(시정명령 3회 이상 포함)</u>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상기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과거 1년간 법위반회수가 <u>3회</u>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나)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은 당해 위반행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할 수 있다.</p> <p>(다) 과거 3년간 당해 업체가 받은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의 누계가 <u>20점(시정명령 5회 이상 포함)</u>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정지요청 조치를 할 수 있다.</p> <p>(2) (생략)</p> <p>마. 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p> <p>(1) (생략)</p> <p>(2) 원사업자가 모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법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시 과거 3년간 법 위반점수 누계에서 <u>1점</u>을 감점처리할 수 있다.</p> <p>(3)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를 함에 있어서 법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계약시 “현금결제비율” 또는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거 3년간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p> <p>(가) 현금결제비율</p> <p>① ~ ② (생략)</p> <p>③ 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은 다음 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으로 본다.</p> <p>(i)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u>환어음</u></p> <p>(ii) 구매자금용에 의한 <u>환어음</u></p> <p>(iii)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등록)에 의해 허가를 받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p>	<p>.....<u>10점</u>.....<u>2회</u>.....</p> <p>.....</p> <p>.....</p> <p>.....<u>2회</u>.....</p> <p>.....</p> <p>(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 또는 조달한 공사, 구매 등에 대하여 할 수 있다.</p> <p>(다)<u>15점</u>.....<u>3회</u>.....</p> <p>.....</p> <p>(2) (현행과 같음)</p> <p>마. 법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센티브제도</p> <p>(1) (현행과 같음)</p> <p>(2)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사건의 직전 1개년도 <u>하도급거래에 있어서</u><u>2점</u>.....</p> <p>.....</p> <p>(3) 하도급법 위반사건 조치를 함에 있어서 법 위반사업자가 하도급계약시 “현금결제비율” 또는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거 3년간 시정조치유형별 부과점수 누계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다.</p> <p>(가) 현금결제비율</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금 등에 의한 결제액은 다음 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으로 본다.</p> <p>(i)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u>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외서</u></p> <p>(ii) 구매자금용에 의한 <u>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외서</u></p> <p>(iii) 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p>

현 행	개 정 안
<p><u>자가 발급한 기업구매카드</u></p> <p><u>(iv)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포함)</u></p> <p><u>〈신 설〉</u></p> <p>(나) ~ (다) (생략)</p> <p>(4) (생략)</p> <p>22. (생략)</p> <p>23. <u>현장직권조사 면제</u></p> <p><u>직권조사 개시일로부터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인 원사업자가 이를 근거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현장 직권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u></p>	<p><u>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u></p> <p><u>(iv) 원사업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u></p> <p><u>(v) 원사업자의 대금결제 시기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u></p> <p>(나) ~ (다)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22. (현행과 같음)</p> <p>23. <u>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직권조사 면제</u></p> <p><u>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준년도 1년간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범위반이 없는 원사업자에 대해 2년간(익년도 및 차익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u></p> <p><u>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원사업자가 “경쟁입찰비율” 90%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하도급법 관련 현장 직권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u></p> <p><u>다. 경쟁입찰비율은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u></p> <p><u>경쟁입찰비율 = (경쟁입찰건수/하도급계약건수) × 100</u></p> <p><u>경쟁입찰건수는 조사대상 기준년도 1년간 수의계약을 제외한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에서 낙찰자 선정기준이 입찰 참가자에게 사전에 고지되었으며,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는 낙찰자·단가 등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조정이 없었던 하도급계약 건수로 한다. 단,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조달을 제외한 시공분야만으로 산정한다.</u></p>